

수시적성검사 통지서

성명		생년월일	-
주소			
면허번호			
출석일시		출석장소	
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		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·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게시판에 공고하며,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